

<p><b>일반사항</b></p>	<p>1-1. 투고자격 본지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그러나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1-2. 원고의 종류 의료감정학에 관련된 원저, 임상연구 발표 및 증례, 종설, 특별기고 등을 게재한다. 단, 종설과 특별기고는 간행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에 한한다.</p> <p>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제출된 원고는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받은 후 간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p> <p>1-4. 중복게재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과거 본지에 실렸던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간행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이름과 호수, 쪽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차출판은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 Med 126:36-47, 1997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p> <p>1-5. 원고의 수정 제출된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투고자의 동의 하에 간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구성 등을 수정할 수 있다.</p> <p>1-6. 논문 게재의 경비, 처리 등 간행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단, 이는 간행위원회에서 추후 의결한 후 시행한다.</p>
<p><b>학술지 발간 및 원고접수</b></p>	<p>본 학회지는 연 2회(5월 30일, 11월 30일) 발간하며, 원고는 간행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해당 학회지의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간행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p>
<p><b>원고 투고 요령</b></p>	<p>3-1. 심사용 원고 모든 원고는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전산인쇄로 작성한다. A4(212×297mm) 백색 용지에 상하 좌우 25 mm 이상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용지 한쪽 면에만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가로쓰기로 타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아래한글을 사용할 때 줄 간격 200%로), 표지를 첫 페이지로 하여 각 장에 쪽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심사용 사본 2부를 우편으로 또는 원본 파일과 심사용 사본 파일을 각각 전자문서(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p>

<p><b>논문양식</b></p>	<p>사용 사본은 표제지 및 본문 내에 소속과 저자명을 모두 지운 심사용 원고를 의미한다.</p> <p><b>3-2. 원고의 분량</b> 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로 2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b>3-3. 원고의 점검</b> 원고 제출 시 투고점검표 양식을 작성하면서 투고규정이 충실히 지켜졌는지 확인한 뒤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 제출 시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b>3-4. 원고의 소유권</b> 논문의 내용과 원고에 관한 모든 출판권은 대한의료감정학회가 소유하며 책임저자는 원고 제출 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단, 기재 내용이 완수된 전자문서는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p> <p><b>3-5. 기타 원고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장에게 한다.</b></p> <p>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참고 문헌(references) 순으로 하며, 그림·표(Figure &amp; Table)와 그림 설명(legends)은 본문 내용에 맞춰 첨가한다.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p> <p><b>4-1. 표제지</b></p> <p>① 표제지에는 상단에 '대한의료감정학회 투고 원고'라고 명기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문 및 영문제목, 2) 국문과 full name 영문 저자명, 3) 저자 소속 기관명, 4)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5) 교신저자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주소,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동통신 번호), 6)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그 원천을 기재하며, 7)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 또는 running footline)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p> <p>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로 구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로 분리하여 나열하고, 제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1', '2'... 등을 위 첨자로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제출된 논문의 표지에 제시된 수정책임자를 교신 저자로 하여 해당 저자명에 별도로 표기(†)한다. 교신 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논문 수정을 책임진다. 교신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간행위원회에서는 제1저자를 교신 저자로 인정한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쓰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사이의 하이픈 표시등 저자의 고유표기는 인정한다. 학위 표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하지 않는다.</p> <p><b>4-2. 초록(Abstract)과 주제어</b> 한글원고 및 영문원고 모두 영문초록을 첨부해야 하며, 영문원고에 한글초록은 첨부하지 않는다. 초록 아래에 영문초록이 끝나는 하단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를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하며 Index Medicus의 의학주제표목(MeSH) 또는 인터넷 사이트 <a href="http://www.nlm.nih.gov">http://www.nlm.nih.gov</a>에서 제시한 용어를 사용한다.</p> <p><b>4-3. 본 문</b></p> <p>① 용어 :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술용어는 교육부 발행 과학기술용어집이나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필요한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로마자를 같이 병기할 수 있고 그 번역이 곤란할 때에는 원문을 사용한다. 약품명은 특정상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일반명으로 표기한다.</p>
--------------------	--

②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시의 표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Arabia숫자로,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혈액학적 수치와 임상 검사상의 검사치는 통상적인 단위나 국제단위(International Unit, SI)를 사용한다.

③ 항목구분: 제출하는 논문의 항목 구분은 I, 1, 1), (1), ①과 같이 한다.

④ 내용주: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내용주(content notes)를 달 수 있다. 이는 해당부분의 문장이 삽표나 마침표로 종결될 때 문장부호의 오른쪽에 논문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sup>①</sup>)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⑤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학적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과 판(version)도 명시한다.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표나 그림으로 기술한 내용을 본문 중에 단순반복하지 않는다.

⑥ 약자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표준화된 약자만 사용한다. 단, 본문 중에 4회 이상 반복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처음 나올 때에 약자를 명기하고 이후부터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4-4. 그 림**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정렬로 한다.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Fig.’라는 표식 위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문이 경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림의 제목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인용된 그림은 반드시 원저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4-5. 표**

① 표는 영문이나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표의 제목은 상단에 작성하며, 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렬한다. 연 번호는 한글인 경우에는 ‘표’, 영문은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문인 경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제목의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③ 표에는 세로 줄을 사용하지 않으며, 열(column)의 제목을 표시한 첫 행(row)은 위쪽에 2선 아래쪽에 1선(실선)을 그어 구분한다. 제목이 2행 이상이고 이것을 행 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선을 사용한다. 각 열은 다른 열과 구분선 없이 간격을 조정하여 표시한다. 영어로 행과 열의 제목을 표기하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④ 설문지 등 영어 표기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한글로 통일되게 표시한다. 표는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쓰며 한 면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한다. 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하단 주석에 기재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기호(\*, †, ‡, §, ||, ¶, \*\*의 순서로 함)를 위첨자로 사용하고, 주석은 표 하단에 해당 기호의 내용을 각단 정렬로 기록한다. 이때 영문인 경우에는 각주 별로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p value의 *p*는 소문자의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⑤ 다른 참고문헌의 표를 인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 출처를 표의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원료와 달리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것임을 명기한다. 만약, 표의 결과가 학술적 목적 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⑥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하여 표 밖에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에는 불필요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4-6. 내용의 수정

필요한 경우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 4-7.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8.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저자가 직접 참고한 문헌에 한정한다. 초록은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쓸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초록만 인용했음을 밝혀야 한다. 재인용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판되지 않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근간(forthcoming)” 이라고 명기한다. 출판되지 않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에 기술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개인적 의견교환)” 혹은 “(비출간 자료)” 와 같이 명기한다.

##### 1)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

① 참고문헌은 순서대로 번호를 양괄호 속에 붙이며, 번호는 저자의 성 뒤에 기재하여야 하고 저자의 성이 없는 경우는 문장의 마침표나 쉼표 다음에 기재한다. (예) 김(1)은..., ...이다.(2-5), ...하며,(6)

② 저자가 2명 이하일 때는 저자의 성을 다 쓰며, 3명 이상일 때에는 저자의 성에 “등” 을 붙인다. (예) 김과 우(3)는..., 박 등(4)은..., Noguerras와 Williams(3)는..., Goldberg 등(4)은...

##### 2) 참고문헌의 표기 양식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언급된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 참고문헌은 3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종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쓰고, 7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쓴 다음에 우리말 이름 뒤에는 ‘등’, 영문이름 뒤에는 ‘et al.’로 약한다. 외국인의 영문 이름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의 대문자를 붙여서 표기한다(예 : Roemer M). 영문학술지의 이름은 임의로 줄여 쓸 수 없으며, 학술지 자체에서 요구하는 약어 혹은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약어를 사용한다.

④ 기관이나 단체가 그 기관이나 단체를 저자로 하여 출간한 것이 아닌 한, 저자 이름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쓰지 않고 개인 저자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 (1) 학술지에 기재된 문헌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년;권(호):쪽수(시작면-종료면).

단, 권마다 계속 페이지를 매겨나가는 잡지는 호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저자가 6명 이하일 때

1) 이준상, 주호노: 의료판례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9(1):5-38.

2) Fidler DP: Globalized Theory of Public Health Law. *J Law Med Ethics*, 2002;30(2):450-461.

- 저자가 7명 이상일 때

1) 김춘배, 박종구, 최서영, 이해중, 조경숙, 이선동 등: 양·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9(2):7-29.

2) Horton H, Birkhead GS, Bump C, Burris S, Cahill K, Goodman RA, et al: The Dimensions of Public Health Law Research. *J Law Med Ethics*, 2002;30:197-201.

- 저자가 단체나 기관일 때

1)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학 연구회 위암이 병리학적 취급규정시안. *대한법리학회지*, 1992;26(2):

	<p>154-163.</p> <p>2) American Journal of Law &amp; Medicine and Harvard Law &amp; Health Care Society: Recent Developments in Health Law. <i>J Law Med Ethics</i>, 2002;30 (2) :309-321.</p> <p>- 권(volume)에 부록(supplement)이 있는 경우</p> <p>1) Bonta D, Praeger S, Schlichtmann J: New Perspectives on Litigation and the Public's Health. <i>J Law Med Ethics</i>, 2001;30 (Suppl 3) :33-40.</p> <p>- 서신(letter)을 인용한 경우</p> <p>1) Enzensberger W, Fischer PA: Metronome in Parkinson's Disease [letter]. <i>Lancet</i>, 1996;327:1337.</p> <p>- 초록(abstract)을 인용한 경우</p> <p>1) Lopez W, Miller JR: The Legal Context of Mosquito Control for West Nile Virus in New York City [abstract]. <i>J Law Med Ethics</i>, 2002;30:135-138.</p> <p>(2) 단행본</p> <p>저서명. 도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쪽수(시작면-종료면).</p> <p>- 개인저자</p> <p>1) 박상기: 법학개론. 서울: 박영사;2000. p.35-52.</p> <p>2) 김천수: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서울: 대구대학출판부;1999. p.156-166.</p> <p>3) Gostin LO: Public Health Law,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2000. p.208-213.</p> <p>- 편저 중의 한 장</p> <p>1) 홍명호: 대한가정의학회 편. 가정의학. 서울: 계축문화사;1997. p.31-41.</p> <p>2)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ho JH, Brenner BM, editors, Hypertens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 Raven Press;1995. p.465-478.</p> <p>- 단체나 기관이 저자인 경우</p> <p>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2001.</p> <p>- 번역서</p> <p>1) McKeown T: The Role of Medicine: Princeton University Press;1979.</p> <p>2) 손명세, 정상혁(옮김): 의학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서울: 한울;1994. p.95-103.</p> <p>- 연구보고서 등</p> <p>1) 연세대학교: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및 향후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p> <p>- 학위논문</p> <p>1) 장 옥: 보험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2001.</p> <p>2) Lee SY: Public Sector Labor Law in the US, Japan and Korea [dissertation], WI(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1994.</p> <p>- 사전 및 유사 참고문헌</p> <p>1) 금성판 국어대사전. 제1판. 서울: 금성출판사;1992. p.755.</p> <p>2) Stedman's Medical Dictionary, 26th ed, Baltimore: Williams &amp; Wilkins;1995. p.119-120.</p> <p>- 팸플릿이나 소개유인물(brochure)</p> <p>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환자진료안내(팸플렛).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2002.</p> <p>(3) 미출판 자료</p> <p>채택된 원고이지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중”(In press) 또는 “근간”(近刊, forthcoming)이라고 명기한다.</p> <p>1) Mendelson D, Jost 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w of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Treatment. <i>J Law Med Ethics</i>, In Press 2003.</p>
--	---

	<p>(4)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매체 체제인 경우</li> <li>1) Caramota SA: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2000: A Snapshot of America's Foreign-Born Population, available at &lt;<a href="http://www.cis.org/articles/2001/back101">http://www.cis.org/articles/2001/back101</a>&gt;.</li> <li>2) html&gt; (last visited July 16, 2001).</li> </ul> <p>- 신문 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상영: 비만은 만성질병·퇴치 캠페인. 한겨레신문. 2002년 2월 27일자.</li> </ol> <p>- 회의자료 혹은 행정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02. 2. 17.</li> </ol> <p>- 법 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50호</li> </ol>
<b>위임사항</b>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간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b>규정의 발효</b>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본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